

# 금강대학교 자체평가 규정

제 정 : 2009. 9. 1.  
개 정 : 2012. 6. 1.  
개 정 : 2018. 5. 21.  
개 정 : 2019. 7. 8.  
개 정 : 2022. 12. 27.  
개 정 : 2025. 8. 1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의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·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삭제 <2022.12.27.>

1. 삭제 <2022.12.27.>
2. 삭제 <2022.12.27.>
3. 삭제 <2022.12.27.>
4. 삭제 <2022.12.27.>

**제3조(평가원칙)** 평가는 객관성·공정성·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
## 제2장 평가기구

**제4조(자체평가기획위원회)** 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진단평가기획·운영위원회(이하 “기획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2. 12. 27.>

② 기획운영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교내위원은 각 부서의 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교외위원은 평가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서 포함시킬 수 있다. <개정 2022. 12. 27.>

③ 위원장은 기획관리처장으로 한다. 다만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위원장을 다른 이로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2. 27., 2025. 8. 1.>

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교내위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⑤ 기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 기본 방향과 전략 수립
2. 자체평가 예산 확보
3. 자체평가결과에 따라 대학교육 개선을 위한 자문
4. 대학 구성원들에게 자체평가 홍보 및 참여유도
5. 자체진단평가위원회 지원 <신설 2022.12.27.>

⑥ 기획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2. 12. 27.>

⑦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관리처에서 주관하며,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 <신설 2022.12.27., 2025. 8. 1.>

**제4조의2(자체진단평가위원회)** ① 평가원이 제시한 각 영역에 대한 평가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자체진단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신설 2022.12.27.>

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, 영역별로 1~2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역할을 분담한다. <신설 2022.12.27.>

③ 위원장은 기획관리처장으로 한다. 다만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위원장을 다른 이로 위촉할 수 있다. <신설 2022.12.27., 2025. 8. 1.>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22.12.27.>

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신설 2022.12.27.>

1. 평가원이 제시한 영역에 대한 평가
2.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작성
3. 현지방문평가 시 담당 평가영역에 대한 면담

⑥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22.12.27.>

⑦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관리처에서 주관하며,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 <신설 2022.12.27., 2025. 8. 1.>

**제5조(회의록)** 삭제 <2022. 12. 27.>

**제6조(간사)** 삭제 <2022. 12. 27.>

**제7조(자체평가실무위원회)**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진단평가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는 10명 내외로 총장이 위촉하며, 각 부서의 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모든 평가영역을 담당하는 실무진을 구성한다. <개정 2022. 12. 27.>

③ 위원장은 기획관리처 기획조정팀장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2. 27., 2025. 8. 1.>

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삭제 <2022. 12. 27.>
2. 삭제 <2022. 12. 27.>
3. 삭제 <2022. 12. 27.>
4. 삭제 <2022. 12. 27.>
5. 자체평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 수집·제공
6. 기타 자체진단평가위원회 지원

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1/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삭제 <2022. 12. 27.>

⑦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관리처에서 주관하며,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 <개정 2022. 12. 27., 2025. 8. 1.>

**제8조(자체진단평가자문위원회)**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진단평가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2. 12. 27.>

② 자문위원회는 10명 내외로 총장이 위촉하며, 내·외부의 고등교육전문가, 대학평가전문가, 고등교육전문기구나 타 대학 등의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2. 27.>

③ 위원장은 기획관리처장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2. 27., 개정 2025. 8. 1.>

④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기획관리처 기획조정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2. 12. 27., 2025. 8. 1.>

⑤ 자문위원회는 자체평가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한다. <개정 2022. 12. 27.>

⑥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2. 12. 27.>

⑦ 삭제 <2022. 12. 27.>

⑧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관리처에서 주관하며,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 <개정 2022. 12. 27., 2025. 8. 1.>

**제9조(전담부서 설치)** 삭제 <2022. 12. 27.>

###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

**제10조(평가계획 수립)** 기획관리처는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,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부(과)에 통지한다. <개정 2022. 12. 27., 2025. 8. 1.>

**제11조(평가대상)** 평가대상은 본 대학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.

**제12조(평가지기)** 평가는 격년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히 실시할 수 있으며,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3조(평가영역)**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·연구 영역
2. 조직·운영 영역
3. 시설·설비 영역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

**제14조(항목별 평가)**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5조(평가자료 제출)** 평가실시 2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부(과)는 기획관리처에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. <개정 2022. 12. 27., 2025. 8. 1.>

**제16조(평가실시)** ① 기획관리처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. <개정 2022. 12. 27., 2025. 8. 1.>  
②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 <개정 2022. 12. 27.>

**제17조(실사)** 실무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 행정부서 및 학부(과)에 실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2. 27.>

**제18조(평가결과 보고)** 평가의 결과는 기획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. <개정 2022. 12. 27.>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최초 자체평가는 2009년도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자체평가 실적과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·집행된 것으로 본다.

#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(제1조~제18조)
- 2.(경과조치)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자체평가 실적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·집행된 것으로 본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